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 [목적]

제 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조 [보험금의 청구]

제 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7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8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9조 [특약의 소멸]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0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11조 [납입보험료의 처리]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13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4조 [해지환급금]

제15조 [배당금의 지급]

제6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16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제17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제18조 [펀드의 유형]

제19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20조 [펀드자동재배분]

제21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제22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제23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24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제25조 [특별계정의 폐지]

제7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6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8관 기타사항

제27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전환 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라. 주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마. 종피보험자 : 주피보험자와 함께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주피보험자가 아니라 주피보험자에 종속되는 피보험자입니다.
- 바. 전환전 계약 : 주계약을 말하며, 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환전 계약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부분의 종전 계약(주계약 및 전환된 특약)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이자율 적용 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년차 이자 = $\frac{100\text{원}}{\text{원금}} \times 10\% = 10\text{원}$
- 2년차 이자 = $\left(\frac{100\text{원}}{\text{원금}} + \frac{10\text{원}}{\text{1년차 이자}} \right) \times 10\% = 11\text{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 나. 평균공시이율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라. 계약자적립금은 아래에서 정의한 바와 같습니다.

- (1)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2) 일반계정전환적립금 : 제20조(펀드자동재배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설명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같더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좌수가 달라져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 최저사망지급금 :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지급금으로서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모두)가 사망하는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최저사망지급금의 지급을 위해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써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바. 최저실적배당연금액 :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실적배당연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을 최저실적배당연금액으로 보증합니다. 다만, 체증형의 최저실적배당연금액은 연금개시시점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연금개시시점으로부터 매년 연계약해당일(월 지급형의 경우 매월 월계약해당일)까지 연복리 2.0%를 적용하여 부리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본형

최저실적배당연금액 = 전환일시금 × 연금보증비율

(2) 체증형

경과기간별 최저실적배당연금액 = 전환일시금 × 연금보증비율 × 1.02^{경과기간}

사. 연금보증비율 : 전환일시금 대비 지급되는 최저실적배당연금액의 비율로서 보험기간 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기본형

A. 연 지급형

연금개 시연령	연금 보증비율	연금개 시연령	연금 보증비율	연금개 시연령	연금 보증비율	연금개 시연령	연금 보증비율
45	2.5328%	54	2.8337%	63	3.2809%	72	4.0156%
46	2.5613%	55	2.8745%	64	3.3444%	73	4.1275%
47	2.5908%	56	2.9172%	65	3.4115%	74	4.2480%
48	2.6215%	57	2.9619%	66	3.4826%	75	4.3781%
49	2.6534%	58	3.0088%	67	3.5580%	76	4.5191%
50	2.6866%	59	3.0579%	68	3.6381%	77	4.6723%
51	2.7211%	60	3.1095%	69	3.7233%	78	4.8394%
52	2.7570%	61	3.1637%	70	3.8143%	79	5.0225%
53	2.7945%	62	3.2207%	71	3.9115%	80	5.2239%

B. 월 지급형

연금개 시연령	연금 보증비율	연금개 시연령	연금 보증비율	연금개 시연령	연금 보증비율	연금개 시연령	연금 보증비율
45	0.2111%	54	0.2361%	63	0.2734%	72	0.3346%
46	0.2134%	55	0.2395%	64	0.2787%	73	0.3440%
47	0.2159%	56	0.2431%	65	0.2843%	74	0.3540%
48	0.2185%	57	0.2468%	66	0.2902%	75	0.3648%
49	0.2211%	58	0.2507%	67	0.2965%	76	0.3766%
50	0.2239%	59	0.2548%	68	0.3032%	77	0.3894%
51	0.2268%	60	0.2591%	69	0.3103%	78	0.4033%
52	0.2298%	61	0.2636%	70	0.3179%	79	0.4185%
53	0.2329%	62	0.2684%	71	0.3260%	80	0.4353%

(2) 체증형

A. 연 지급형

연금개 시연령	연금 보증비율	연금개 시연령	연금 보증비율	연금개 시연령	연금 보증비율	연금개 시연령	연금 보증비율
45	1.4635%	54	1.8206%	63	2.3387%	72	3.0347%
46	1.4976%	55	1.8685%	64	2.4113%	73	3.1531%
47	1.5330%	56	1.9184%	65	2.4878%	74	3.2802%
48	1.5696%	57	1.9705%	66	2.4651%	75	3.4172%
49	1.6076%	58	2.0250%	67	2.5463%	76	3.5651%
50	1.6470%	59	2.0819%	68	2.6323%	77	3.7255%
51	1.6879%	60	2.1415%	69	2.7236%	78	3.9001%
52	1.7304%	61	2.2041%	70	2.8206%	79	4.0907%
53	1.7746%	62	2.2697%	71	2.9241%	80	4.3000%

B. 월 지급형

연금개 시연령	연금 보증비율	연금개 시연령	연금 보증비율	연금개 시연령	연금 보증비율	연금개 시연령	연금 보증비율
45	0.1209%	54	0.1503%	63	0.1931%	72	0.2506%
46	0.1237%	55	0.1543%	64	0.1991%	73	0.2604%
47	0.1266%	56	0.1584%	65	0.2054%	74	0.2709%
48	0.1296%	57	0.1627%	66	0.2036%	75	0.2822%
49	0.1328%	58	0.1672%	67	0.2103%	76	0.2944%
50	0.1360%	59	0.1719%	68	0.2174%	77	0.3077%
51	0.1394%	60	0.1768%	69	0.2249%	78	0.3221%
52	0.1429%	61	0.1820%	70	0.2329%	79	0.3378%
53	0.1465%	62	0.1874%	71	0.2415%	80	0.3551%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을 이 특약의 “계약일”로 봅니다.
-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다. 월계약해당일 : 계약일로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라. 연계약해당일: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당일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매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4. 보험료 관련 용어

- 가. 전환일시금 : 이 특약으로 전환할 때 납입되는 일시납보험료로서, 전환 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 특약의 일시납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이 특약의 전환일시금에서 이미 지급한 실적배당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5. 기타 관련 용어

- 가. 변액보험 :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계약자적립금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나. 일반계정 :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다'목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 다. 특별계정 :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라. 펀드 :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 마. 특별계정 운용보수 : 특별계정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더한 보수를 말합니다.

$$[\text{특별계정 운용보수}] = \text{운영보수} + \text{투자일임보수} + \text{수탁보수} + \text{사무관리보수}$$

- 바. 운영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사. 투자일임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아. 수탁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 관련 규정의 위반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자. 사무관리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차. 기준가격 : 펀드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좌당 기준가격으로 표시됩니다. 펀드의 계약자적립금은 해당일의 좌당 기준가격과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용어해설

[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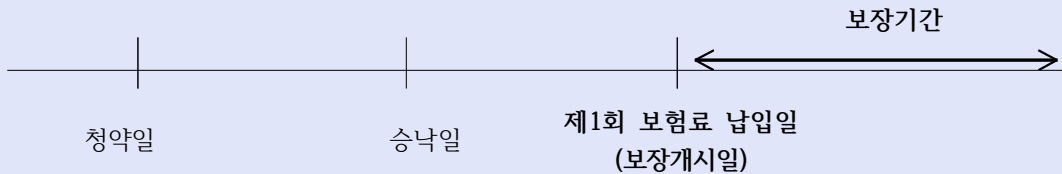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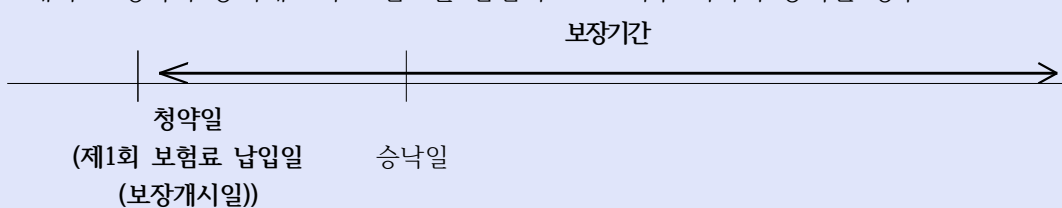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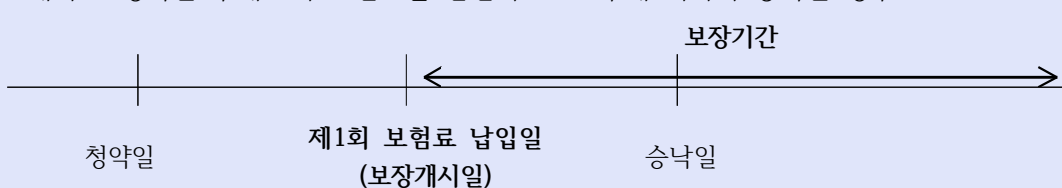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제1회 보험료]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매년 연계약해당일(월 지급형의 경우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실적배당연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실적배당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용어해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용어해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제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신청일 이후에 전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전환일시금을 받은 날로 합니다.
- ④ 계약자는 전환을 신청할 때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주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주기
실적배당연금형	기본형	개인계약	연 지급형 월 지급형
		부부계약	
	체증형	개인계약	
		부부계약	

제8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 부부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계약의 경우 전환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자로 하며,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 (전환전 계약이 2명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1명)로 합니다.
 2. 부부계약의 경우 전환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자,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2명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1명)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부부계약의 경우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더 이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종피보험자 자격 유지에 관한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종피보험자 자격 유지 신청은 제6항에 따른 새로운 종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주피보험자의 재혼 등으로 인해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 ⑥ 부부계약의 경우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종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해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0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제11조 [납입보험료의 처리]

- ① 전환일시금이 납입되면, 회사는 납입된 보험료를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전환일시금이 납입된 날
 - 이체금액 : 전환일시금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0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경우의 계약자적립금 및 지급되는 연금액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②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75%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 ⑤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 ⑥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용어해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1.75%일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75%)로 적립됩니다.

[최저보증이율 예시]

→ 계약일은 2017년 1월 1일, 보험기간은 30년인 경우

보험기간
(최저보증이율: 1.75%)

2017/1/1

계약일

2046/12/31

보험기간
종료일

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7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펀드 운용실적이 매일 평가되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특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이 특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 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④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채권형 :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의 국·공채 및 특수채, 회사채 [신용등급 BBB+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포함)을 포함] 및 채권형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의 “채권형(설정일 2010년 4월 30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2. 코리아인덱스형 : 국내 상장주식(코스닥주식 포함) 및 주식형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의 “코리아인덱스형(설정일 2010년 4월 30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3. 코-원자재인덱스형 : 국내외 주요 원자재인덱스 관련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 또한 국내 상장주식(코스닥주식 포함) 및 주식형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의 “코-원자재인덱스형(설정일 2010년 4월 30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4.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 :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집합투자증

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9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글로벌인덱스 수익률의 변동성에 따라 펀드 내 글로벌인덱스를 추종하는 기초자산의 투자비율을 주기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글로벌인덱스는 KOSPI200 Index, S&P500 Index, HSCEI로 구성되며, 위험자산의 변동성 수준에 따라 위험자산의 투자비율은 0%이상 100%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의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설정일 2012년 4월 20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5.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국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투자에 있어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PLUS 변액연금보험의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4월 17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6.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전세계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에 투자하는 국내외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지수선물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주기적으로 펀드 내 편입 자산을 선별/교체하며,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턴변액유니버설보험의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설정일 2014년 5월 7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7.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전세계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됩니다. 이는 무배당하모니변액연금보험1704_알리안츠생명_A+GA의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7년 5월 12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8.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국내 주식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6년 5월 9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9.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전 세계 대표적인 성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90%까지 편입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변액유니버설보험의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설정일 2007년 08월 21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0.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중국, 홍콩 지역 관련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11월 2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1.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의 “베트남그로스 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7년 9월 1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2. 유럽주식재간접형: 유럽 지역의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의 “유럽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7년 9월 11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3.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글로벌 시장 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04월 17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4.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 전세계 증시에 상장된 일등 기업 및 혁신기업과 고소비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소비재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저축보험의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8년 11월 02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5.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 미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이러한 우량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저축보험의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8년 11월 02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6.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형 : 전세계 선진 및 이머징 시장의 소비자 구매력 성장과 소비활동 증가에 관련되어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높은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의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8년 01월 16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7. 성장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9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큰사랑변액유니버설보험의 “성장형(설정일 2005년 7월 5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② 제1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에 대하여 보험관련 법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펀드의 유형 외에 새로운 펀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가격변동 등의 사유인 경우 3개월 이내, 해지 등의

사유인 경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이 특약으로 전환 신청을 할 때 아래에서 정한 펀드플랫폼 중 1종을 선택해야 하며, 전환 신청을 할 때 선택한 펀드플랫폼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동안 적용됩니다.

펀드플랫폼	안전자산펀드	성장자산펀드
코리아인덱스 플랫폼	채권형	코리아인덱스형
코-원자재인덱스 플랫폼	채권형	코-원자재인덱스형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 플랫폼	채권형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플랫폼	채권형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플랫폼	채권형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 플랫폼	채권형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 플랫폼	채권형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글로벌셀렉트재간접 플랫폼	채권형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차이나포커스재간접 플랫폼	채권형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 플랫폼	채권형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유럽주식재간접 플랫폼	채권형	유럽주식재간접형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 플랫폼	채권형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 플랫폼	채권형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 플랫폼	채권형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 플랫폼	채권형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형
성장형펀드 플랫폼	채권형	성장형

② 전환일시금은 제20조(펀드자동재배분) 제1항에서 정한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 신청을 할 때 선택한 펀드플랫폼내 설정된 펀드에 자동 편입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계약자는 펀드플랫폼 내 펀드간 펀드적립금의 이전이나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전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연도 중 연12회에 한 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다른 펀드플랫폼으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전부에 한해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펀드플랫폼을 변경한 이후의 펀드적립금은 제20조(펀드자동재배분) 제1항에서 정한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따라 변경된 펀드플랫폼내 설정된 펀드에 자동 편입됩니다.

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펀드플랫폼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다만, 이전하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전 가능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펀드플랫폼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펀드적립금을 제5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향후 펀드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로운 펀드플랫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펀드자동재배분]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으로 전환 신청을 할 때 선택한 펀드플랫폼내의 펀드 중 아래에서 정한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따라 펀드별 편입비율을 산출합니다.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은 산출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보험기간동안 안전자산펀드와 성장자산펀드에 자동적으로 편입됩니다. 이 때 펀드별로 편입되는 적립금은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따라 최소 월 1회 이상 변경되므로 성장자산펀드적립금과 안전자산펀드적립금 또한 최소 월 1회 이상 변경됩니다. 다만, 펀드별 편입비율은 이 특약으로 전환을 할 때 별도로 공지합니다.

펀드별 편입비율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
성장자산펀드 편입비율	[Min.(기준성장자산적립금×승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80%)] /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
안전자산펀드 편입비율	100% - 성장자산펀드 편입비율

주) ■ 기준성장자산적립금

: Max.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 - 경과보증금×평가비율×1.02×조정계수, 0]

1. 기본형

- 경과보증금 = 최저실적배당연금액×(K-L)
- 평가비율

$$\text{평가비율} = \frac{\text{최저실적배당연금액} \times (1 + \beta^{\alpha}) \times \frac{1 - \left(\frac{1}{1 + \text{할인이율}1} \right)^{(K-L)}}{\left(1 - \frac{1}{1 + \text{할인이율}1} \right) \times (1 + \text{할인이율}2)^D}}{\text{최저실적배당연금액} \times (K-L)}$$

2. 체증형

- 경과보증금 = $\sum_{i=L}^{K-1} \text{최저실적배당연금액}_i$
- 평가비율 = $\frac{\sum_{i=L}^{K-1} \frac{\text{최저실적배당연금액}_i \times (1 + \beta^{\alpha})}{(1 + \text{할인이율}1)^{(i-L)}}}{(1 + \text{할인이율}2)^D \times \sum_{i=L}^{K-1} \text{최저실적배당연금액}_i}$

- 최저실적배당연금액_i : 실적배당연금형 체증형의 연금개시시점으로부터 i년 경과 연계약해당일(월 지급형의 경우 i월 경과 월계약해당일)의 최저실적배당연금액
- 할인이율 : 평가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이자율로서 계약별 할인이율은 계약시점의 이 보험의 일반계정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로 함.

할인이율	연지급	월지급
할인이율1	연단위 할인이율	월단위 할인이율
할인이율2	일단위 할인이율	

- K : 실적배당연금 총 지급횟수

K	실적배당연금 총 지급횟수
연 지급형	100 - 연금개시나이
월 지급형	(100 - 연금개시나이) × 12

- L : 기지급된 실적배당연금 횟수
- D : 차회 실적배당연금 지급일까지의 잔여일수
- β^{α} :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 승수

: 성장자산펀드 편입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배수(범위 : 1.0~4.0)로 이 특약으로 전환할 때 계약자에게 별도로 공지함. 다만, 전환일 이후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안내함

■ 조정계수

: 성장자산펀드 편입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계수로 월계약해당일에 한하여 적용되며, 월계약해당일 전일 기준가격 대비 월계약해당일 현재 기준가격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함. 다만, 월계약해당일 또는 월계약해당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계약해당일 전 영업일을 해당 월의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해당 월의 월계약해당일 전 영업일을 월계약해당일 전일로 함.

기준	조정계수
월계약해당일 기준가격/월계약해당일 전일 기준가격 < 1	1.05
월계약해당일 기준가격/월계약해당일 전일 기준가격 ≥ 1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하 ‘기준 안전자산도달일’이라고 한다) 해당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고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운용합니다.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날부터 일반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을 ‘일반계정전환적립금’이라 하고,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날부터는 특별계정 운용실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1.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따라 매일 평가하여 산출된 “성장자산펀드적립금”이 “0”인 경우
2.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경과보증금×평가비율×1.02]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③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제10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21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그에 부합하게 대체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22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 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하거나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3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24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따른 자산

운용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합니다.

제25조 [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19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원본액]

펀드의 최초 설정이후 현재까지 실제 펀드에 납입된 금액 중 환매금액을 제외한 누적금액을 말합니다.

제7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6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 사망지급금, 최저실적배당연금액) 및 타 특약의 경우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어해설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제8관 기타사항

제27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전 계약의 약관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등에 관한 사항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실적배당연금(제3조)

실적배당연금형의 기본형, 체증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적배당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실적배당연금형 기본형

1) 개인계약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월 지급형의 경우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직전 계약자적립금 수익률이 반영된 기본실적배당연금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2) 부부계약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월 지급형의 경우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직전 계약자적립금 수익률이 반영된 기본실적배당연금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나. 실적배당연금형 체증형

1) 개인계약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월 지급형의 경우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직전 계약자적립금 수익률이 반영된 체증실적배당연금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2) 부부계약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월 지급형의 경우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직전 계약자적립금 수익률이 반영된 체증실적배당연금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주)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마'목에서 정한 최저사망지급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사망지급금을 지급합니다.
2. 실적배당연금액이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바'목에서 정한 최저실적배당연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실적배당연금액을 실적배당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실적배당연금형 체증형의 경우 최저실적배당연금액은 연금개시시점으로부터의 경과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연금개시시점에 지급되는 실적배당연금은 최저실적배당연금액으로 합니다.

4. 「계약자적립금」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라'목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반영되는 기간 중에는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5.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6. 「직전 계약자적립금 수익률」은 직전년도 연계약해당일(월 지급형의 경우 직전월도 월계약해당일)부터 연금 지급사유 발생시점까지의 계약자적립금의 수익률을 말하며, 직전년도 연계약해당일(월 지급형의 경우 직전월도 월계약해당일)의 기준가격과 연금지급사유발생시점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제20조(펀드자동재배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 「직전 계약자적립금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공시이율로 합니다.
7. 「기본실적배당연금지급률」은 「직전 계약자적립금 수익률」이 잔여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8. 「체증실적배당연금지급률」은 「직전 계약자적립금 수익률」이 잔여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실적배당연금이 연복리 2%로 체증하는 금액이 되도록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5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 관련)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연금 (제3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제14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상기 공시이율은 제1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만기일 이전이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